사망 후 인지청구와 상속분 가액 관계법령

[민법] 제860조(인지의 소급효)

법률 제21454호 · 2026. 3. 17. 시행

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.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

[민법] 제864조(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)

법률 제21454호 · 2026. 3. 17. 시행

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

[민법] 제999조(상속회복청구권)

법률 제21454호 · 2026. 3. 17. 시행 · 제2항 발췌. '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' 중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2024. 6. 27.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.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주석 참조.

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,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

[민법] 제1014조(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)

법률 제21454호 · 2026. 3. 17. 시행

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